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. 11. 29 선고 2018가단116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1. 8

판결 선고 2018. 11. 29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전북 부안군 C 전 1,242㎡ 지상 건물(부안군 허가번호 D에 따라 건축면적 195.7㎡, 연면적 356.92㎡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)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948,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1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18. 5. 15.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16,19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18. 1. 15.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전북 부안군 C 전 1,242㎡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를 매수하여 2018. 1. 30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피고는 2009. 11. 9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0. 2. 19.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195.7㎡, 연면적 356.92㎡ 의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였으나, 1층 골조 및벽체 시공 정도만 마친 상태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.

3)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그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,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8년도 기준 월 316,19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1내지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인도하며,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로써 2018. 4. 15.까지 3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948,570원(= 월 316,190원 x 3개월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 다음날인 2018. 6. 15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. 5. 15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16,19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민형